

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. 4. 19 선고 2016가단4396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
가등기말소등기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16. 4. 12.

판결 선고 2016. 4. 19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에 대한 이 법원 2013. 4. 25. 접수 37164호 매매예약
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말소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위 부동산에 대한 2013. 4. 23. 매매예약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원상회복을 청구.

판사이형주

별지